

노무 2차  
GS 0기

노동법

	<b>이장훈 노무사</b>	카톡 ID : hrlabor.1350@hanmail.net
<b>강 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li> <li>• 제23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li> <li>• 現) 노무법인 율현 공인노무사</li> <li>• 現) 노무사단기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임</li> <li>• 前) 프라임법학원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임</li> </ul>	
<b>일 정</b>	9/14(일)-12/14(일) 매주 일요일 오전, 오후 연강 (총26회) ※ 10/5(일) 추석연휴 강의없음	
<b>시 간</b>	오전 9:30-13:00 오후 14:00-17:30	
<b>교 재</b>	노동법요해 제9판(비앤엠북스 간, 9월 둘째주 출간예정) 공인노무사 시험용 법전 회차별 판례암기자료 및 복습용 체크포인트 제공	

**강의목표**

1.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Legal mind 형성
2. 사고력 향상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3. 답안에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키워드 중심의 암기

**강의특징**

**1. 주제별 로드맵 설명 후 노동법요해 제9판 내용 확인 및 주요판례 사례 설명**  
 법은 퍼즐입니다. 전체 큰 흐름의 체계를 먼저 잡고 개별적인 법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점별 법리를 거시적으로 설명한 후 노동법요해 제9판을 가지고 주요 내용을 체크해 드립니다. 또한 판례법리는 주요 사례의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판례 이해도를 높여 드립니다.

**2. 스토리 있는 두문자 제공**

판례 암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스토리 있는 두문자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판례법리는 먼저 해당 조문(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 판례법리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근기법 제23조 제1항).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입니다.

해당 내용을 ① 근기법 제23조 제1항, ② **사고개근책**(책을 사서 매일 본다), ③ **목성여지 동경 위태**(한국이 목성 기지에서 광자포를 쏘면 일본은 막을 여지가 없고 동경은 위태롭다)로 암기합니다.

**3. 매회 판례테스트 실시**

매회 진도 범위 내에서 중요한 판례 내용을 괄호 넣기 형식의 판례 테스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하는 분들은 여러분과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아니라 유예 이상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GS2기 답안작성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GS2기 전 판례 암기는 필수입니다.

**4. 상시 상담 및 질의응답에 대한 빠른 피드백 제공**

공부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기타 수험생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빠른 상담 및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특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 전화상담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상담 요청자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 이수 과 목**

**[노동법] 2026 이장훈의 법학 기초 입문특강**

☞ 노무사단기 홈페이지에서 무료 수강 가능

**강의진도**

※ 세부 일정은 진도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	날짜		강 의 내 용
1회	9/14	오전	O.T / 노동법의 의의, 노동기본권
2회		오후	노동법의 권리·의무의 주체(1)
3회	9/21	오전	노동법의 권리·의무의 주체(2), 근로기준법, 근로관계 일반(1)
4회		오후	근로관계 일반(2), 취업규칙(1)
5회	9/28	오전	취업규칙(2), 임금(1)
6회		오후	임금(2)
7회	10/12	오전	임금(3), 근로시간과 휴식(1)
8회		오후	근로시간과 휴식(2),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안전과 보건
9회	10/19	오전	재해보상, 고용보험
10회		오후	인사와 징계(1)
11회	10/26	오전	인사와 징계(2)
12회		오후	해고(1)
13회	11/2	오전	해고(2), 그 밖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14회		오후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사업주 변경과 근로관계
15회	11/9	오전	노동조합(1)
16회		오후	노동조합(2)
17회	11/16	오전	노동조합(3)
18회		오후	단체교섭(1)
19회	11/23	오전	단체교섭(2)
20회		오후	단체협약(1)
21회	11/30	오전	단체협약(2)
22회		오후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1)
23회	12/7	오전	쟁의행위(2)
24회		오후	쟁의행위(3), 부당노동행위(1)
25회	12/14	오전	부당노동행위(2)
26회		오후	부당노동행위(3), 부속법령